
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-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강태원 의원 외 7인

나. 발의 및 회부일자 : 2007년 12월 4일 / 2007년 12월 7일

다. 위원회 상정일자 : 2007년 12월 14일

- 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

2. 제안이유

- 기록매체의 다양화로 인한 회의록 중 전자회의록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회의록 작성 및 배부 등 운영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.

3. 주요내용

- 회의록 작성·발간의 필요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0조)
- 자구정정과 이의 결정사항에 전자임시회의록을 추가함(안 제52조)
- 일반인에게 배포할 수 있는 회의록을 전자회의록으로 변경함(안 제53조)

4. 검토의견

- 회의록의 자구정정과 이의 결정시 전자임시회의록인 의정시스템 게재 사항을 추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할 수 있는 회의록을 현실에 맞게 전자회의록으로 변경하며 회의록 작성과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록매체의 다양성을 현실에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